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2. 28 선고 2021가단503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이마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8.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10. 26. 접수 제20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10. 26. 접수 제20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0. 13.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과 피고는 1986. 8. 2.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C은 2017. 1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8. 2.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20.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10. 26. 접수 제202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과 피고는 2020. 12. 7.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외에 D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대출금 24,612,348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한편 C은 2020. 4.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할부대출을 받아 K7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나, 2020. 10. 20. 타인에게 위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20. 12. 17. 위 승용차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로 명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과 피고가 2020. 10. 26.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사실, C과 피고는 위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20. 12. 7.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과 피고의 혼인기간, C과 피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각 기여한 정도, 이혼신고 당시 C과 피고의 재산 현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위 부부의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초과하여 그 전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C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C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

[별지]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충청남도 태안군 외 1필지 계2층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태안군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변색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271.73㎡

2층 271.73㎡

3층 271.7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충청남도 태안군 대 460㎡2. 충청남도 태안군 대 3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변색벽돌조 8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765분의 87

